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이훈미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13,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fair1110@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훈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2. .

발 의 자 : 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 제안이유

-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규정 신설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 (안 제12조제1항)
- 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 (안 제1조, 제10조, 제11조)
 -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 확대 (안 제6조제2항)
 - 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대상이 되는 ‘기관·단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 (안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 의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의장의 사임 권고 의무화 (안 제10조제3항)
- 다. 위 ‘가’ 및 ‘나’와 관련된 징계기준 정비 (안 제18조 및 별표2)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46조”로 하고, “군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군포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1호 중 “의원이”를 “군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이 규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군포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군포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군포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군포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③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검직 금지 및 신고)”를 “(검직 신고)”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의원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의원은 군포시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로, “때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을 때는”을 “있는 경우”로 한다.

제18조제5호 중 “관리인 등 검직 금지 관련한”을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영리목적 거래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행위 제한	○ 회피의무의 위반 ○ 상임위소관업무 관련 영리행위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공개사과, 출석정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규정에 따라 <u>군포시의회 의원</u> (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이 윤리의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자치법</u> 」 제46조----- ----- <u>군포시의회 의원</u>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호</u> 와 같다.	제2조(정의) ----- ----- <u>각 호</u> ----- -----.
1.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이란 <u>의원이</u>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1. ----- -- <u>군포시의회 의원</u> (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 -----.
2. (생 략) ② <u>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을 통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u>	2. (현행과 같음) ② <u>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u>
<신 설>	제10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이
규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
·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
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군포시가 출자·출연(재출자
· 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
· 단체

2. 군포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군포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
체

4. 법령에 따라 군포시장의 인
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
원

③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

제10조(검직 금지 및 신고) ① 의 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 자치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 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 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 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 에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 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검직사항 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	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 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 야 한다. 1.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 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된다고 인정 될 때 제11조(검직 신고) <삭 제>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자 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 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 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 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 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 야 한다. ② ----- 제1항----- ----- ----- ----- -----
---	---

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생략)

⑤ (생략)

⑥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에 따라 본인 또는 특별위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 설>

② 의장은 의원의 영리행위가

----.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2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의원은 군포시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영리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군포시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그 겸한 직을 사임할

제1항 및 제2항-----

-----.

제13조(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 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때에
는 -----

-----.

② -----
----- 있는 경우 -----

-----.

<삭 제>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 4. (생략)

5.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6. 소관 특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7. (생략)

제18조(징계)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0조제3항에 따른 -----

6.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위
배되는 영리목적 거래

7. (현행과 같음)